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

제정일: 2004. 1. 19 개정일: 2019. 8. 21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본 정관은 광운대학교 학칙 제97조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(이하 "법" 이라 한다)에 의한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06. 12. 28>

제2조(명칭) 본 법인의 명칭은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(이하 "산학협력단"이라 한다)이라 한다.

제3조(사무소 소재지) 산학협력단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광운로 20, 광운대학교 내에 둔다.<개정 2019.08.21>

제4조(산학협력단의 목적 및 업무) ① 산학협력단은 학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 대학의 산학 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- ②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.
 - 1.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
 - 2.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
 - 3.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<개정 2019.08.21>
 - 4.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
 - 5.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
 - 6. <삭제 2019.08.21>
 - 7. 직무발명과 관련된 기술을 제공하는 자 및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보상<신설 2019.08.21>
 - 8. 산업교육기관의 교원과 학생의 창업지원 및 기업가정신 함양 촉진 등에 관한 업무<신설 2019.08.21>
 - 9. 교직원이 소유하거나 교직원과 그 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지식재산권의 수탁관리<신설 2019.08.21>
 - 10. 본교와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연구소간의 상호협력활동 및 대학과 협력연구소의 시설·기자재·인력 등의 공동 활용에 관한 업무의 지원<신설 2019.08.21>
 - 11.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대학안에 설치·운영중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한 지원<신설 2019.08.21>
 - 12.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대학안에 설치된 실험실공장에 대한 지원<신설 2019.08.21>
 - 13.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술단지안에 포함된 대학의 교지에 입주한 기업 및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<신설 2019.08.21>
 - 14. 그 밖에 대학의 교지에 설치·운영되는 기업 및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<신설 2019.08.21>
 - 15. 지식.인력개발 관련 교육 및 훈련<신설 2019.08.21>
 - 16. 산학협력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·제공.홍보<신설 2019.08.21>
 - 17. 산학협력사업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・훈련<신설 2019.08.21>
 - 18. 산학협력사업 및 국책사업의 통할<신설 2019.08.21>

- 19. 산학협력사업 및 국책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원 및 조정<신설 2019.08.21>
- 20. 교내.외 연구비 지급 및 관리<신설 2019.08.21>
- 21. 연구간접비 징수 및 관리<신설 2019.08.21>
- 22. 자체 재원부담으로 인력 임용 및 관리<신설 2019.08.21>
- 23. 부설연구소 평가 및 지원<신설 2019.08.21>
- 24. 학교기업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<신설 2019.08.21>
- 25. 기술지주회사 설립,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업무<신설 2019.08.21>
- 26. 초기 창업자 선발, 보육, 투자에 관한 업무<신설 2019.08.21>
- 27. 그 밖에 산학협력과 관련된 사항으로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<호 번호 변경 2019.08.21, 개정 2019.08.21>
- 28.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<신설 2019.08.21>
- 제5조(관련부서의 업무조정 등)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단의 목적을 달성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간 업무조정을 기획처에 요청할 수 있다.

제 2 장 조 직

- 제6조(이사) ① 산학협력단은 업무집행기구로서 1인의 이사를 둔다.
 - ② 산학협력단장은 재임 중 이사가 된다.
- 제7조(단장) ①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정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동등한 자격이 있는 외부인사로 총장이 임명한다.
 - ② 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 - ③ 단장은 대외적으로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며 대내적으로 조직을 총괄한다.
 - ④ 단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후임단장 선임시까지 직무를 대행하며, 부단장이 없을 때에는 총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8조(조직) ① 산학협력단에 연구소를 둘 수 있으며, 연구소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 다.<개정 2005. 2. 21, 2009. 7. 27>
 - ② 산학협력단에 산학협력사업을 위해 필요한 센터를 둘 수 있으며, 각 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<개정 2016. 11. 23>
 - ③ 산학협력단의 행정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학사업팀, 연구지원팀, 연구진흥팀, 경영관리팀을 둔다.<개정 2005. 2. 21, 2010. 12. 7, 2011. 8. 24, 2012. 8. 21, 2016. 11. 23>
 - 1. 각각의 팀에는 직원, 연구원, 조교를 둘 수 있다. <개정 2010. 12. 7>
 - 2. 총장은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인원을 단장의 요청에 따라 산학협력단에 파견할 수 있다. 이 경우 파견된 자는 대학 직원의 신분을 유지한다.
 - 3. 산학협력단은 자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직원, 연구원, 조교를 임용할 수 있다.
 - 이 경우, 임용기간, 보수, 근무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.
 - ④ 산학협력단에 기술지주회사 및 학교기업을 둘 수 있고,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 <신설 2019.08.21>
- 제9조(운영위원회) ① 산학협력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 안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 - ② 운영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.

제 3 장 재산 및 회계

- 제10조(재산의 종류)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설립시의 기본재산으로 한다.
 - 1. 출연재산

- 2.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국내.외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증여재산
- 3.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국내.외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출연금, 기부금 또는 보조금
- 4. 최초 설립시 대학으로부터 지원받은 재산
- 5. 산학협력단 운영에 의해 취득한 재산<신설 2019.08.21>
- 제11조(운영경비) 산학협력단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을 재원으로 한다.
 - 1. 기본재산의 운용수익
 - 2. 출연금.기부금.보조금
 - 3. 사업수익
- 제12조(재무관리의 제한) 산학협력단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함에는 총장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.
 - 1. 기본재산의 양도, 증여, 임대, 교환, 포기
 - 2. 예산외 채무의 부담
 - 3. 채권의 포기
- 제13조(수입) 산학협력단의 수입은 다음 각 호로 한다.<신설 2019.08.21>
 - 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
 - 2. 산학협력 계약에 의한 수입
 - 3. 산학협력사업에 의한 수입
 - 4. 산학협력 사업성과 활용에 의한 수입
 - 5. 산학협력단 소유의 연구시설, 실습시설 및 장비에 대한 사용료
 - 6. 산학협력과 관련한 기부금품
 - 7. 산학협력단이 설치한 학교기업으로부터의 운영수익금
 - 8. 기술지주회사로부터의 배당 및 그 밖의 수익금
 - 9. 이자수입
 - 10. 기타수입
- 제14조(지출)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.<신설 2019.08.21>
 - 1. 산학협력단의 관리 운영비
 - 2. 산학협력 계약이행에 필요한 경비
 - 3. 대학의 시설 · 운영 지원비
 - 4. 수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
 - 5. 산학협력 관련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지원비
 - 6. 지식재산권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
 - 7.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
 - 8. 산학협력단이 설치하는 학교기업의 출연금 및 운영비
 - 9.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출자
 - 10. 기타 산학협력에 필요한 경비
- **제15조(회계관리)** ① 산학협력단의 회계는 그 수입과 지출, 재산의 증감 및 변동상태가 명백히 나타나도록 한다.<신설 2019.08.21>
 - ② 산학협력단의 소관에 해당하는 모든 수입 및 지출은 이를 산학협력단의 회계에 계상한다.<신설 2019.08.21>
 - ③ 회계는 산학협력에 관한 법령이나 산학협력에 관한 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원별 또는 사업 단위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할 수 있다.<신설 2019.08.21>
- 제16조(회계연도) 산학협력단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의 회계연도와 같다.<개정 2019.08.21>
- 제17조(예·결산서 제출) 산학협력단장은 매 회계연도에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한 내에 예·결산서 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신설 2019.08.21>

제 4 장 보 칙

- 제18조(비밀유지 의무) 본 정관에서 규정한 제직에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는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<조 번호 변경 2019.08.21>
- **제19조(정관의 변경)** 총장은 대학의 규정변경절차에 따라 본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.<조 번호 변경 2019.08.21>

제20조(해산) <조 번호 변경 2019.08.21>

- ① 산학협력단이 정관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해산한다.
- ② 해산은 총장의 명에 의한다.
- ③ 해산시의 잔여재산은 당해 대학에 귀속한다.
- ④ 해산 시 단장은 총장이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청산업무를 수행한다.

제21조(공고) <조 번호 변경 2019.08.21>

- ① 다음의 사항은 공고하여야 한다.
 - 1.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고사항
 - 2. 변경등기사항 중 산학협력단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
 - 3. 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널리 일반인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단장이 인정한 사항
- ② 공고방법은 일간신문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 본 정관의 효력발생 시기는 2004년 1월 19일로 한다.

제2조 이 정관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체결된 산학협력계약상의 권리.의무는 산학협력단이 승계한 것으로 본다.

제3조 대학의 장은 이 정관의 효력발생 시에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 가운데 산학 협력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이전절차를 밟아야 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정관은 200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정관은 2006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정관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09. 7. 27>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정관 시행 전에 산학협력단에 설립된 연구소는 이 정관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정관은 2010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정관은 2011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정관은 2012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정관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정관은 2016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정관은 2016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정관은 201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.